

민원 인쇄 ✕
인쇄자: 김명호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8-1005472
신청일	2026-08-25 09:23:03
신청인	김명호
신청인 구분	개인
주소	[03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15-45 1019-201(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관동, 은평뉴타운구파발)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유선전화	070-8770-5659
휴대전화	
전자우편	mkim1795@daum.net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국토부 감사과 임가현, 주택과 안선행 감사해라
내용	아래 설명한 "아파트 관리비 도둑은 감독기관 공무원들"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1.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의 핵심 수단은 수의계약(관리소장 멋대로 업자 선정하는 계약). 도둑질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토부는 수의계약 계약서 사본 공개([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및 거래대금 입증은 단 3가지(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카드 명세서)로 한정시켰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위 2 법조문만 감독하면, 도둑질 불가능. 즉 감독기관의 가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래는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도둑질 가담 예다

2.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하는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 서로 간의 범죄 은폐 "부당거래"로

고소인: 김명호(고소장)

피고소 기관: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형법] 제30조(공동 정범), 제32조(중범)

국민을 위하여 서로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서로 간의 범죄 묵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2기관은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의 관리비 도둑질 사건을(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 은평경찰서 2026-001051, 이하 "관리비 도둑질") 은폐/축소하는데 작당하였기에, 알선수재 관리비 도둑질의 공동정범 및 중범으로 고소한다.

공동정범 입증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정범 입증에 대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요지

- (1)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 (2) 그 의사 결합에 대한 입증은, 정황 사실들을 치밀한 관찰,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위 기관의 의사 결합, 즉 공동정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사실들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2. 정황 사실들과 그 연관성

(1) 서로 간의 범죄적 약점 쥐고 있는 집행 기관

가. 은평경찰서는 [주차장법] 및 [불법건축물]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임에도 (3.24일 고소, 서부지검 2026형제7286호)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기관인 은평구청은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은폐해 주고 있고

나. 은평구청은 관리비 도둑질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옥 구청 주무관은 관리비 도둑질의 공범으로(3.17일 고소) 은평경찰서에 고소된 상태.

(2) 관리비 도둑질의, "수의계약서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조사(이하, "핵심조사")를

일치단결하여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2기관

가. 2년 6개월여, 고소인이 수의계약서 관련 게시물을 올려놓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eunpyeong10>)의 게시물 확인은 핵심조사로서, 관리비 도둑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100% 유죄 확정하는 것이고 그건 곧 은평구청을 범죄기관으로 낙인 찍는 것이니 은평구청이 은평경찰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가만히 있겠는가?

나. 그러니 은평경찰서는 핵심조사를 위법하게 5개월여 미루며 은평구청의 감사를 기다려온 것이고

"위법 개판 감사" 발표 인용하여 "위법 개판 수사" 결과를 내겠다는 뻔한 수작인 거다.

다. 물론 당연히 4일간의 은평구청 "위법 개판 감사"(8.18-21일)에서도 핵심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일절 하지 않았다(*카페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18일(오후 3-4시) 감사현장(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찾아가 강력하게 핵심조사를 해야 한다며 카페 주소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3. 결론: 2기관이 합심하여 핵심조사 거부함으로써, "서로 간의 범죄 은폐 알선"을 주고 받은 행위로 알선수재 공동정범인 것. 그리고 관리비 도둑질의 종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종년놈들의 기관들이 서로 간의 범죄 비호 "부당거래"로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방조하고 있는 거야.

* 기록으로 남길 뿐, 고소인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법대로 해결될 거라고는. 왜냐하면, 대검찰청 "공무원 부패 장려 부장" 주민철을 비롯한 검사년놈들이 썩어 빠지고 죄다 돌대거리들이거든.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그 검사년놈들도 관리비 사기 당하는 주제에 "묻지마 불기소 처분"하며 "지 발등 내려 찍는" 돌대거리들이란 말이다.

자세한 건 ⇒ <https://seokgung.com/corrupt9.htm>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